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힘내라 대한민국

2020년 9월 8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9월7일(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0. 9. 7.(월)	담당부서	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 TF
담당과장	이재석 팀장(044-203-5895)	담 당 자	조동후 사무관(044-203-5894)

산업부, 「포항지진피해구제법」 개정안 입법예고

- 피해구제지원금의 지방비 지급 근거, 재심의 규정, 소멸시효 특례 신설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성윤모)는 **「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」 일부개정법률(안)**을 9월 8일부터 **입법예고**한다고 밝혔다. (입법예고 기간 : '20년 9월 8일 ~ 10월 19일)

○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말 피해구제 지원금 기준을 발표할 때, 관계 **지자체와 협의한 사항으로, 포항지진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**하기 위한 것이며,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❶ **(피해구제지원금 지방비 지급 근거)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100%를 지원**하되, **국비 80%, 지방비 20%로** 분담하기로 함에 따라,

- 지자체에서도 피해구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원금 지급 주체를 **'국가'에서 '국가 및 관계 지자체'**로 변경함 (제14조 개정)

❷ **(재심의 규정)**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**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에 대한 결정**에 대해 피해자가 **재심의를 신청**할 수 있도록 **규정을 신설함** (제16조의2 신설)

* 재심의 결정 기간 : 2개월 + 1개월(필요시 연장 가능)

❸ **(손해배상 소멸시효 특례)** 포항지진 발생 이후 상당한 기간이 이미 경과하여, 피해자가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결정 이후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경우, **소멸시효 완성까지의 기간이 짧아 피해자의 권리 행사가 제약**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,

- 소멸시효를 **손해·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**하고, **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또는 재심의 신청시 소멸시효가 정지**(신청일 ~ 결정통지일)되는 내용의 특례 조항을 신설함 (제34조의2 신설)

□ 산업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피해자, 전문가 등의 **다양한 의견을 수렴**하고, 관계기관 협의,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**신속하게 특별법이 개정**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제정 TF 조동후 사무관(☎ 044-203-589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**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안 입법예고문**

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 - 528호

「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」을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9월 8일

산업통상자원부장관

「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」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1. 개정 이유

가. 포항지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하여 국가 이외에 관계 지방자치단체도 피해구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

나.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

다. 포항지진 발생 이후 상당한 기관이 이미 경과하여, 피해자가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 이후에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, 소멸시효 완성까지의 기간이 짧아 피해자의 권리 행사가 제약될 수 있으므로, 민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특례를 신설

2. 주요 내용

가. 피해구제 지원금의 지방비 지급 근거 신설(안 제14조)

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의 지급 주체를 '국가'에서 '국가등'(국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)으로 변경

나. 재심의 근거 조항 신설(안 제16조의2 신설)

1)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

2) 재심의 결정기간은 2개월(사실조사 등을 위해 필요시 30일 연장)로 하고, 신청요건, 신청기간 및 절차 등 재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

다. 소멸시효 특례 조항 신설(안 제34조의2 신설)

1)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「민법」 등의 관계법령에도 불구하고 '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'으로 함

2)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이나 재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결정통지를 받은 날까지 진행되지 아니하도록 함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(30118)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 TF
- 전자우편 : mprior22@korea.kr
- 팩스 : 044-203-4787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 TF(전화 044-203-5894, 팩스 044-203-4787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